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를 건



의회운영위원회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으로 변경 또는 신설부서 상임위 소관 반영 등(안 제4조 제2항)과 관련조항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”를 “충청북도의회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.)에”를 “의회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여성정책관”을 “여성가족정책관”으로 하고, “보건환경연구원”을 “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마목 중 “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”을 “충청북도 청주의료원, 충청북도 충주의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자치연수원”을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농정국, 농업기술원”을 “신성장산업국, 농정국, 충청북도농업기술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62조에 따라 <u>충청북도의회</u>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의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	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 -.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정책복지위원회	2. -----		
가. <u>여성정책관</u> 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교, <u>보건환경연구원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가. <u>여성가족정책관</u> , ----- ----- --, <u>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</u> -----		
나. ~ 라. (생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마. <u>청주의료원</u> , <u>충주의료원</u> 운영에 관한 사항	마. <u>충청북도 청주의료원</u> , <u>충청북도 충주의료원</u> -----		
바. (생략)	바. (현행과 같음)		

현행	개정안
3. 행정문화위원회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<u>자치연수원</u> 소관에 관한 사항 나.·다. (생략)	3. ----- 가. ----- ----- <u>충청북도자치연수원</u>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경제통상국, <u>농정국</u>, <u>농업기술원</u> 소관에 관한 사항 나. ~ 바. (생략) 5.·6. (생략)	4. ----- 가. ----- <u>신성장산업국</u>, <u>농정국</u>, <u>충청북도농업기술원</u> ----- 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 5.·6. (현행과 같음)

관 련 조 례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재난안전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바이오산업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, 환경산림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. <개정 2010. 12. 31, 2011. 12. 30, 2012. 8. 31, 2012. 11. 2, 2012. 12. 28, 2013.4.25, 2013.6.28, 2015.1.1, 2015.7.1, 2016.7.1, 2018. 4. 6, 2020.1.1.>

제18조(설치)① 법 제113조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"연수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2조(설치)① 법 제11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6조(설치)① 법 제113조 및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

제3조(보좌기관)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,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. <개정 2011. 12. 30, 2014. 4. 18, 2015. 7. 1, 2019.5.10.>

□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조(명칭과 소재지)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,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라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.